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괴정2동과 신평1동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취득대상 재산 현황》

위 치	면 적(m ²)		소요예산 (천원)	비 고
	토 지	건 물		
계	1,154	648.13	1,669,000	공사비 229,000천원 포함
괴정2동190-12번지의외 1필지	497	450.83	811,000	공사비 171,000천원 포함
신평1동84-11번지의외 1필지	657	197.3	858,000	공사비 58,000천원 포함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4. 검토의견

□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 주요내용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괴정2동과 신평1동 지역에 공동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재산취득의 필요성,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 먼저 재산취득의 필요성 측면은

2007년도 우리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예정 지역인 괴정2동190-12번지 일원은 고지대 경사지에 접해 있고 저소득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도로망이 취약하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며, 신평1동84-11번지 일원은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 예비지역으로서 정책이주지내 저소득 주거 및 영세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임

□ 다음 관계법령 적법성 부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지방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건은 아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함

□ 끝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공사비등은 총 1,669백만원이며 이중 1,168백만원은 시비보조로 2008. 8. 8 시(교통관리과)에 2009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요구 하였으며 구 부담 501백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시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확보 바람

2008.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 용 택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②(생략)

③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생략)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생략)

※ 복무 조례안 시달(부산광역시 총무담당관-13597(2008. 9.10)호)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u>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 ② ~ ③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④ 생략</p>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제18조</u>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 ~ ⑩ 생략</p>	<p>제21조(병가)① ----- -----<u>어느 하나</u>에----- ----- ----- ----- ----- -----,제20조제4항에 따라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④(현행과 같음) ⑤----- ----- ----- <u>규정 제7조제1항</u>----- ----- ----- ⑥ ~ ⑩ (현행과 같음)</p>